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접 수
2012.09.28
법무법인
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3513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52

대표이사 정동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 고 1. 김남한

2. 김철호

3. 남태현

4. 류원엽

5. 류화수

6. 문영섭

7. 문장진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8. 백덕현

1701호

9. 성세경

10. 송승호

송달장소

11. 양달표

12. 윤광섭

13. 윤우영

14. 이영섭

15. 이정덕

16. 전용훈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송달장소

17. 정동식

18. 정연홍

19. 정해웅

20. 조동희

21. 홍진생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데, 원고는 2011. 11. 7. 피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4.경부터 같은 해 1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 정문에서 출근 시간에 맞추어 '출근 선전전'을 하고 원고의 사업장에 들어가 도로를 순회하거나 사업장 내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이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으로 고소하였다.

라. 위 고소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류원엽은 벌금 100만 원, 피고 문영섭은 벌금 150만 원, 피고 백덕현, 이영섭은 각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김남한, 김철호, 남태현, 류화수, 문장진, 성세경, 송승호, 양달표, 윤광섭, 이정덕, 정동식, 정연홍, 정해웅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고 윤우영, 전용훈, 조동희, 홍진생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8, 제12호증의 1 내지 16, 제13호증의 1 내지 13, 제14호증의 1 내지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21, 제17 내지 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2011. 11. 14.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들 다수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원고의 사업장 일부를 무단점거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1. 11.부터 12.까지 사이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판매실적이 22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의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 있는 행위가 존재하였고 위 행위와 원고의 업무가 방해된 결과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각 인과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 및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출근선전전'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는 점 및 피고들의 위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판사 천지성 천지성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정본입니다.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보 윤준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